

중국의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의 주요내용

정보신청기관: 국무총리실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國家知識產權戰略綱要)」(이하에서는 「강요」)¹⁾는 지식재산권의 창조, 활용, 보호와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창조형(創新型) 국가와 소강사회(小康社會)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국 국무원이 2008년 6월 5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등 지방정부와 중앙부처 등에 통지한 정책성문건²⁾이다. 「강요」는 크게 서론, 지도사상과 전략목표, 중점전략, 특별임무, 전략조치 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요」에서는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식물신품종, 특정영역의 지식재산권, 국방지식

재산권 등 특별임무를 명시하고, 지식재산권 창조능력 제고를 포함한 아홉 가지 전략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강요」의 중점은 지식재산권제도 개선, 지식재산권의 창조와 활용, 지식재산권보호강화, 지식재산권남용방지 5개 방면이다. 중국은 2020년까지 세계 지식재산권 강국수준에 도달, 5년 내에는 자주(自主) 지식재산권수준을 대폭 제고하다는 목표하에, 신지식자원을 개발·이용하여 경제발전방식을 전환하고, 자원과 환경의 제재를 완화하여 국가핵심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물질문화생활의 필요를 만족시키



- 1) 2007년 10월 15일 중국 공산당 제17대 보고 중에 후진타오 총서기는 '지식재산권전략실시'를 제안하였고, 2008년 국무원상무회의에서 「강요」를 통과하여, 6월 5일 국무원이 반포하였다. 미국이 법안과 정책으로 지식재산권전략을 수립하였다면, 중국은 3년에 걸쳐 총 30여 개 부서 수백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국가지식재산권전략」이라는 문건을 제정하였다. 「국가지식재산권전략」은 「강요」와 20개의 개별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강요」가 「국가지식재산권전략」의 총론이라면 개별주제는 「강요」에 필요한 기초를 제공하고 「강요」의 지도하에서 한층 더 심화된 내용이다. 20개의 개별주제는 지식재산권전략의 거시적 문제(중국지식재산권발전목표 등), 지식재산권의 주요 유형, 지식재산권의 법제건설, 지식재산권의 주요 관리 부분, 지식재산권중점 업종 등 5개 방면에 지식재산권의 창조, 관리, 보호와 활용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강요」는 총 65개 조로 구성되어있으며 약 7,600자이다.
- 2) 「강요」는 규범적인 법률문건이 아닌 향후 비교적 긴 일정한 시간 동안 중국지식재산권사업발전을 지도하는 하나의 전략적 정책지도성 문건이다. 정책성문건이란 국가정권기관, 정당조직과 기타 사회정치집단이 소속된 계급과 계층의 이익과 의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행동원칙, 임무, 업무방식, 절차 및 구체적인 조치를 담고 있는 문건이다.

는 것이 중대한 전략의이라고 「강요」에서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국가지식재산권전략」은 중국의 중요한 국가전략으로서 지식재산권업무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바, 이하에서는 「강요」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I. 지도사상과 전략목표

1. 지도사상

「국가지식재산권전략」을 실시함에 있어 등소평이론과 ‘세계대표’ 중요사상³⁾을 지도사상으로 견지하며 과학발전관(科學發展觀)⁴⁾을 성실히 관철시켜야 한다. 창조 격려, 효율적 활용, 법에 의한 보호, 과학적 관리 방침에 따라 지식재산권제도 개선에 전력해야 한다. 지식재산권에 도움이 되는 법치환경, 시장환경과 문화 환경을 적극 조성하며, 중국의 지식재산권의 창조, 활용, 보호와 관리능력을 대폭 제고한다. 창조형국가와 소강사회 건설을 위하여 강력히 지지한다.⁵⁾



3) 마르크스, 레닌, 마오쩌둥의 사상을 ‘세계대표’ 중요사상이라고 한다.

4) 과학발전관이란 중공중앙(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후진타오가 2003년 7월 28일 제출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방면에서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관을 수립하여, 사회경제와 사람의 각 방면에서의 발전”을 말한다. 도시와 농촌의 발전, 지역발전, 사회경제발전,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 국내발전과 대외개방의 요구에 따라 개혁하고 발전하는 일종의 방법론이자 중국 공산당의 중대한 전략 사상이다. 중국공산당 제 17차 전국대표대회 당 규장에 포함된 중국공산당의 지도사상 가운데 하나이다.

5) 중국은 2005년에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지식재산권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2008년에는 「강요」를 수립하는 등 지식재산을 통한 소강사회(小康社會)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6) 개정된 중국 「특허법」은 유전자원을 “인체, 동물, 식물 혹은 미생물 등에 함유된 유전기능단위에서 취해지고 실제 혹은 잠재적 가치가 있는 재료(取自人体, 动物, 植物或者微生物等的含有遗传功能单位并具有实际或者潜在价值的材料)”라고 정의한다.

2. 전략목표

2020년까지 중국을 지식재산권 창조, 활용, 보호관리 수준이 비교적 높은 국가로 건설한다. 5년 내에는 자주 지식재산권 수준과 지적재산권 활용 효과를 대폭 향상시킨다. 핵심저작권산업 생산액이 국내총생산액에 차지하는 비중을 현저히 제고한다. 우량 식물신품종과 높은 수준의 집적회로 배치설계를 소유한다. 영업기밀, 지리적 표시, 유전자원(遺傳資源)⁶⁾, 전통지식과 민간예술 등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한다. 지식재산권보호 상황을 현저히 개선한다. 불법복제(해적판), 위조품 등 침해 행위와 권리보호를 위한 비용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지식재산권남용현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 사회전체, 그 중에서도 시장주체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의식을 보편적으로 제고시키고, 지식재산권문화 분위기를 초보적으로 형성한다.

II. 중점전략

1. 지식재산권제도 개선

지식재산권법률법규를 정비한다.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관련 법률법규를 즉시 개정한다.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예술과 지리적 표시 등 방면의 입법 작업을 적절한 시기에 시작한다. 지식재산권과 관련 있는 법들을 조합하여 체계를 이루도록 입법하며, 법률법규의 실제 시행가능성을 강화한다. 불공정경쟁, 대외무역, 과학기술, 국방 등 방면의 법률법규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 있는 규정들을 보완한다.

지식재산권 집행법과 관리체제를 완비한다. 사법(司法)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집행법체계를 구축하여 사법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주도적 작용을 발휘하도록 한다. 또한 지식재산권 경제, 문화와 사회정책에서의 지도를 강화하여, 산업정책, 지역정책, 과학기술정책, 무역정책과 지식재산권정책이 상호 관련되도록 한다.

2. 지식재산권의 창조와 활용

재정, 금융, 투자, 정부조달정책과 산업, 에너지, 환경보호 정책을 활용해 시장주체의 지식재산권 창조와 활용을 유도하고 지지한다. 또한 기업이 지식재산권 창조와 활용의 주체가 되게 한다. 자주적으로 창조한 성과의 지식재산권화, 상품화, 산업화를 촉진하여,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양도, 허가, 저당 등의 방식으로 지식재산권의

시장가치를 실현하도록 인도한다. 대학교, 과학연구소가 지식재산권 창조에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중점기술영역을 선택하여 핵심 자주 지식재산권과 기술표준을 형성하도록 한다.

3.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치벌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비용을 낮추며 권리 침해의 대가를 높여 지식재산권침해를 효과적으로 억제한다.

4. 지식재산권 남용방지

관련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권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정 경쟁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한다.

5. 지식재산권 문화배양

지식재산권홍보를 강화하여 사회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의식을 제고한다. 지식과 창조를 존중하고 신용을 지키며 법을 준수하는 지식재산권 문화를 형성한다.

III. 특별임무(專項任務)

1. 특허

생물과 의약, 정보, 신(新)재료, 선진제조, 선진에너지, 해양, 자원(資源) 환경, 현대농업, 현대교통, 우주항공 등 기술영역에서 전체 영역을

초월하여 핵심기술의 특허를 소유하고, 고기술 산업과 신흥 산업 발전을 지지한다.

표준관련 정책을 제정 개선하고, 특허인정표 준행위를 규범한다. 기업, 업종조직이 국제표준 제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지한다.

직무발명제도(職務發明制度)를⁷⁾ 개선하여 직무발명인이 적극적으로 창조성을 발휘하는 데 뿐만 아니라 특허기술실시의 이익분배 체제를 촉진하는 데도 유리하다.

특허권 수여의 조건에 따라 특허신청절차를 개선하고 심사의 질을 제고하여 비정상적 특허 신청을 방지한다.

특허보호와 공공이익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한다. 법에 의거하여 특허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강제허가제도(強制許可制度)를⁸⁾ 개선하고 예외제도를 두어 합리적인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제정한다.

2. 상표

상표권리등록자와 소비자의 합법권익을 확실히 보호한다. 집행능력을 강화하고, 위조품 등 침해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며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시장 질서를 보호한다.

기업의 상표전략 실시를 지지하여 경제활동 중에 자주(自主) 상표를 사용하도록 한다.

상표가 농업의 산업화에 충분히 작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시장주체가 상표를 등록하고 사용하도록 적극 추진하며, 농산품의 질을 제고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며 농산품의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시장경쟁력을 증강한다.

상표관리를 강화한다. 상표의 심사효율을 제고하고 짧은 심사기간에의 심사의 질을 보장한다.

3. 저작권

신문출판, 방송, 문학예술, 문화오락, 광고, 공예미술,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보네트워크 등 저작권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지한다. 민족특색을 갖추거나 시대적 특징을 갖춘 작품의 창작을 지지하며, 시장 경쟁을 통한 우수 문화 작품의 창작을 지지한다.

제도를 개선하고 저작권의 시장화를 촉진한다. 저작권저당, 작품등기와 양도계약을 기록으로 남기는 제도를 개선하고 저작권 이용방식을 발전시키며, 저작권 거래의 비용과 위험부담을 낮춘다.

법에 의거하여 불법복제행위를 처리하고 불법복제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인다. 불법복제상품을 대규모로 제조하고 판매하거나 퍼뜨리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불법복제현상을 억제한다.



7) 중국 「특허법」은 직장의 임무를 집행하거나 직장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된 발명 창조를 직무발명창조라고 한다.

8) 중국 「특허법」 제 6장과 「특허법실시세칙」 제5장에 특허실시의 강제허가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4. 영업비밀

시장주체가 법에 의거하여 영업비밀 관리 제도를 구축하도록 인도한다. 타인의 영업 비밀을 절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으로 처벌한다.

5. 식물신품종

격려체제를 구축하고, 신품종 재배를 지지하며, 육종(育種)⁹⁾으로 얻어진 결과를 식물신품종권(植物新品種權)으로 전환한다. 식물신품종권을 소유한 종묘(種苗)기관을 형성하도록 지지하며, 식물신품종보호의 기술체계를 구축하고 식물신품종 테스트 지침을 신속히 제정하여 심사 측정 수준을 제고한다.

자원(資源)제공자, 육종자(育種者), 생산자와 경영자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농민의 합법권익에 대한 보호를 중시한다. 종묘를 한 기관과 농민의 식물신품종 권리에 대한 보호의식을 제고하고 품종권자, 품종생산 중개판매단위와 신품종을 사용하는 농민에게 공동으로 수익하도록 한다.

6. 특정영역의 지식재산권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를 보완한다. 지리적 표시의 기술표준체계, 품질보증 및 측정체계를 구

축한다. 지리적 표시 자원을 총체적으로 조사하고, 지리적 표시 상품을 지원하며 지방 특색을 갖춘 자원이나 인문자원을 현실적 생산력으로 전환하도록 장려한다.

유전자원보호, 개발과 이용제도를 개선하고, 유전자원유실과 무질서한 이용을 방지한다. 유전자원보호, 개발과 이용의 이해관계를 협조하고, 합리적인 유전자원 취득과 이익분배 체제를 구축한다. 유전자원제공자에게 동의권이 있음을 알려주도록 보장한다.

전통지식보호제도를 보완하여 구축한다. 전통지식의 정리와 계승을 지지하고, 전통지식의 발전을 촉진한다. 전통의약지식재산권의 관리, 보호와 이용 협조체제를 개선하고 전통공예의 보호, 개발과 이용에 힘쓴다.

민간문예(문학과 예술)를 보호하고 발전시킨다. 민간문예작품을 발굴하고, 민간문예보존인과 후속 창작인간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관련 개인, 단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집성회로 배치설계 독점권의 효율적인 이용을 강화하며 집성회로 산업발전을 촉진한다.



9) 인공적인 방법으로 동식물의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내거나 기존 품종을 개량하는 것을 가리킨다.

7. 국방지식재산권

국방지식재산권의 통일협조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권리귀속과 이익분배, 유상(有償)사용, 격려체제 및 긴급 상황 하에서의 효율적인 기술 실시 등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력한다.

국방지식재산권 관리를 강화한다. 지식재산권 관리에 국방과학연구, 생산, 경영과 장비 구매를 포함하고 중대한 국방지식재산권의 통제능력을 증강한다. 관건기술의 지침을 공포하고 무기장비에서의 관건적인 기술과 군인과 민간이 결합한 고신기술영역에서의 자주지식재산권을 형성한다. 국방지식재산권에 대한 안전경보체제를 구축하고 군사기술합작과 군수품 무역에서의 국방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별 심사를 시행한다.

국방지식재산권을 유효하게 활용한다. 국방지식재산의 기밀보호해제(保密解密)제도를 개선하여 국가안전과 국방이익을 확보한다는 기초 상에서 국방지식재산권이 민간 이용 영역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민간 이용 영역의 지식재산권이 국방영역에서도 활용되도록 장려한다.

IV. 전략조치

1. 지식재산권 창조능력 제고

기업을 주체로 하고, 시장이 주도하며, 산·학·연(産學研)이 서로 결합하는 자주 지식재산권창조체계를 구축한다. 주도기업이 연구과제 항목을 정하고 경제활동을 진행하기 전에 지식

재산권정보검색을 하도록 한다. 기업이 원시창조와 재창조를 통하여 자주지식재산권을 형성하도록 지지한다. 기업 등 시장주체가 해외에서도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도록 장려한다.

2. 지식재산권 전환활용 격려

창조요소를 기업으로 집중시켜 대학교, 과학연구소의 창조성과나 결과가 기업으로 이전되도록 하여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적극 활용하고 단기간에 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시장주체가 기술 자료와 영업비밀 관리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며 지식재산권가치평가, 통계 및 재무 회계제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권 정보 검색과 중대 사항 예비경보제도를 제정한다. 또한 대외합작 지식 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시장주체가 법에 의거하여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침해행위와 법률소송에 대응하도록 하며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응하는 능력을 제고시킨다.

3. 지식재산권 법제건설 촉진

지식재산권 특징을 반영한 입법체제를 구축하고, 입법의 질을 제고한다. 지식재산권입법 전후평가 작업을 강화한다. 입법의 투명도를 높이고, 기업, 업종협회 및 대중이 입법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지식재산권법률개정과 입법해석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새로운 문제에 즉시 대응하도록 한다. 지식재산권 기초성질의 법률제정의 필요성과 그 실행성에 관하여 연구한다.

4. 지식재산권법 집행의 수준제고

지식재산권 재판체제를 개선하여 구제절차를 간소화한다. 지식재산권 민사, 행정과 형사사건을 모두 수리하는 지식재산권 전문 법정을 설치한다. 특허 등 기술성이 비교적 강한 사건을 심사 수리하는 관할권 문제를 연구하고 지식재산권 상소법원 설립을 고려해 본다. 지식재산권 재판기구를 좀 더 보완하고, 지식재산권 사법의 인원을 보강하여 재판과 집행능력을 제고한다.

지식재산권 사법해석(司法解釋)¹⁰⁾ 업무를 강화한다. 지식재산권 안건은 전문성이 강한 특징이 있으므로 사법감정(司法鑒定)¹¹⁾, 전문가증인(專家人), 기술조사 등 소송제도를 구축 보완하고 지식재산권 소송 전에 임시 조치제도를 개선한다. 특허와 상표 권리의 확정 및 수여절차를 개혁하고 특허 무효 심리와 상표 심사평가 기구를 준(準)사법기관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연구한다.

지식재산권법 집행의 질을 제고하고 법집행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법집행의 효율을 제고한다. 반복적, 집단적 침해와 대규모 불법복제, 위조 행위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고, 지식재산권을 중점적으로 보호한다. 행정 법집행 기관은 형사사법기관으로 지식재산권형사안건을 이

송하고 형사사법기관은 지식재산권형사사건의 수리 강도를 높인다.

세관의 법 집행 강도를 강화한다. 지식재산권 국경지대를 보호하고 양호한 수출입 질서를 유지 보호하여 중국 수출상품의 명예를 제고한다. 국제적 협력 체제를 충분히 활용하여 국제적 지식재산권 위법 침해행위를 규제하고 세관이 국제지식재산권보호에 있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5. 지식재산권 행정관리 강화

지역과 업종의 지식재산권 전략을 제정 실시한다. 중대한 경제활동의 지식재산권 심의제도를 보완하고 경제사회발전에 부합된 자주 지식재산권 창조와 산업화를 지지한다.

지식재산권 관리 직원을 확충하고 업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그 수준을 높인다. 경제사회발전의 요구에 따라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지식재산권 관리 기구를 설치하도록 한다.

지식재산권 심사와 등기 제도를 개선하고 절차와 효율을 제고하며 행정적 소비 비용을 낮추고 지식재산권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인다.



10) 중국의 사법해석은 영미법계의 판례와는 다르며, 여러 가지 형식으로 존재한다. 대표적 형식으로 어떤 사항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최고인민법원은 이에 대한 판결의 지침을 주거나, 최고인민법원이 법률해석을 사전에 하여 그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하급심 법원에 통보한다.

11) 사건을 분명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전문 기능과 과학 지식을 운용하여 감별과 판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DNA 조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국가기초 지식재산권정보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높은 수준의 특허, 상표, 저작권, 집성회로 배치설계, 식물신품종, 지리적 표지 등 지식재산권 기초 정보 저장 창고(database)를 구축하고, 중국에 적합한 검색방식과 검색체계를 신속히 개발한다. 식물신품종보호측정 및 보존 기관을 세운다. 국방지식재산권 정보 플랫폼을 구축한다. 각 지방, 각 관련 업종이 스스로에게 필요한 지식재산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지도하고 장려한다. 지식재산권체계를 집중하고 자원을 정리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지식재산권 예비경보체제(預警應急机制)를 구축한다. 중점 영역의 지식재산권 발전추세를 보고하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지식재산권 분쟁과 갑자기 발생하는 사건에 대하여 대비책을 세우도록 하며 적절히 대응하여 손해를 막고 줄인다.

6. 지식재산권 중개서비스 발전

지식재산권중개서비스관리를 개선하고 업종의 자율을 강화한다. 신용을 바탕으로 정보관리, 정보평가 및 신용을 저버릴 경우 처벌하는 등 신용관리 제도를 구축한다. 지식재산권 평가 작업을 규범하고 평가 신뢰도를 제고한다.

지식재산권 중개서비스업무수행훈련제도를 구축하고 중개서비스 직업훈련을 강화하며 업무수행자질관리를 규범한다. 지식재산권대리인 등 중개서비스인의 처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변호사 대리 제도를 연구하여 제정한다. 국방지식재산권 중개서비스체계를 개선한다. 중개조직의 섭외지식재산권 신청 및 분쟁처리능력, 국제지식재산권 사무참여 능력을 대폭 끌어올린다.

업종협회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시킨다. 업종협회가 지식재산권 업무를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정보교류를 촉진하며, 조직이 공동으로 권리를 유지하도록 장려한다. 정부가 업종협회의 지식재산권업무의 감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기술시장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충분한 정보, 활발한 교역, 양호한 질서가 어우러지는 지식재산권교역체계를 구축한다. 교역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역비용을 줄이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지식재산권 정보 서비스를 육성하고 시장화로 발전시켜 각 계층의 지식재산권 정보의 필요를 충족시킨다. 사회자금이 지식재산권 정보화건설에 투자되도록 장려하고 기업이 가치가 증가하는 지식재산권 정보 개발이용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7. 지식재산권 인재구축 강화

부처협조체제를 구축한다. 지식재산권인재그룹을 전면적으로 계획한다. 국가와 성(省)급 지식재산권인재 데이터베이스와 전공인재 정보 네트워크를 신속히 구축한다.

국가지식재산권인재매양 기지를 건설한다. 수준 높은 지식재산권 교사가 될 수 있는 인재를

신속히 양성한다. 지식재산권 2급 학과를 설립하고 조건을 갖춘 대학교에 지식재산권 석사, 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지식재산권 인재를 대규모로 육성하고, 기업이 시급히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권 관리와 중개서비스 인재를 중점적으로 배양한다.

연수 계획을 제정하여 당정부의 지도 간부, 공무원, 기업과 사업기관의 관리자, 전문기술인, 문학예술 창작인, 교사 등에 지식재산권 연수를 광범위하게 추진한다.

지식재산권 전공 인재와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인재구조를 개선하고 인재의 합리적인 교류를 촉진한다. 공무원법의 실시와 연관시켜 지식재산권 관리부서 공무원 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국가제도개혁의 총체적 요구에 따라 지식재산권 인재의 전공 기술과 평가체계를 구축 개선한다.

8. 지식재산권 문화건설 추진

정부가 주도하고, 신문매체가 지지하며, 사회공공이 대거 참여하는 지식재산권 홍보 업무 체계를 구축한다. 협조체제를 개선하고 관련정책과 업무계획을 제정하며 지식재산권 홍보 보급을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문화 건설을 추진한다.

대학교에 지식재산권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지식재산권 교육을 대학생 소질 교육체계에 포함시킨다. 전국의 초중등 학교에 지식재산권 보

급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지식재산권의 내용을 초·중등교육과목체계에 포함시킨다.

9. 지식재산권 대외교류 협력

지식재산권 영역의 대외교류 협력을 강화한다. 지식재산권 대외정보소통교류체제를 구축한다. 국제와 지역의 지식재산권 정보자원과 기초 시설 건설과 이용의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 지식재산권 인재배양을 위한 대외합작을 장려한다. 국비유학생과 자비유학생의 지식재산권 전공을 하도록 인도 격려한다. 해외지식재산권 고위층 인재를 채용하도록 장려하며 국제지식재산권 질서 수립에 적극 동참하고 국제조직의 관련 회의 일정에 참여한다.

V. 평가 및 시사점

「국가지식재산권전략」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체도를 활용하여, 사회경제 전 영역에서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중국의 중요한 국가전략이다. 국가상공행정관리총국(國家工商總局)이 2009년 6월 2일 공포한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 관철실시를 위한 상표전략실시에 관한 의견(貫徹落實「國家知識略產權戰略綱要」大力推進商標戰略實施的意見)에서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상표전략¹²⁾에 관한 지도사상, 전략목표 및



12) 상표전략은 국가지식재산권전략의 주요 내용이다.

전략임무에 관해 계획하고 구체적 임무를 제출하고 있다. 중국은 이처럼 「강요」를 철저히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상공행정총국에서 상표작업 항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상표전략실시 작업을 성실히 진행하였고 실제 작업에 있어 진전이 있었다. 중국은 2005년에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지식재산권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식재산을 중국경제 3대 핵심전략으로 내세워 지식재산 창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본문과 이상의 사실을 통하여 중국의 지식재산권전략은 단순히 자국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전략이 아니라, 중국의 지식재산권이 처한 여러 문제를

적극 개선하고 활용하여 중국 지적재산이 자주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국가전략임을 알 수 있다.

유 예 리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